

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3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9.

제 출 자 : 서초구청장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(복지위원) : 2017.10.24. 삭제
- 2)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(복지위원) : 2018.5.2. 삭제
- 3) 사회복지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(복지위원) : 2017.3.21. 삭제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2) 입법예고 : 2019. 6. 7 ~ 2019. 6. 27(20일)
- 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(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
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)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(성별영향평가법 제5조)

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